

삼성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이해상충 방지 정책



Samsung
Fund

이해상충 방지 정책

<p>정책 목적</p>	<p>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이슈를 최소화하고, 만일 발생시에는 이를 적극적 해소하기 위하여 同 정책을 운영합니다.</p>
<p>주요 이해상충</p>	<pre> graph TD GS[고객·수익자] <--> SA[삼성자산운용] GS <--> IM[임직원] SA <--> GS1[계열사] SA <--> HJ[회사/계열사 고객] </pre>
<p>이해상충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스튜어드십 팀 등에 한해 공유하는 등 엄격한 Chinese wall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 계열사 등의 의결권 행사時 관련 법령 및 회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이해상충 방지 • 회사 및 계열사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운용, 의결권 행사 조직간 업무 분리 및 주주활동 관련 정보 차단 等 • 임직원과 투자대상회사간 개별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주식거래에 대한 제한 정책 엄격 운용, 이해관계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관련 업무 배제 • 기타 제반 내부통제제도를 엄격 운용 중이며 외부 의결권자문기관 활용도 이해상충방지에 기여
<p>발생시 조치</p>	<p>이해상충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 발생 時에는 고객의 이익관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사내 정책을 운영</p>

이해상충방지 대응 원칙

삼성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본 정책은 당사가 2016년 12월 19일자로 공표되어 시행중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본 정책에서 “수탁자책임”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이해상충 상황에 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원칙과 지침, 구체적인 방법, 권한과 의무 및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상충 대응 원칙

삼성자산운용은 회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의 파악·평가·관리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적절하고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이해상충 발생의 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표적인 이해상충 상황에 대하여서는 각 유형별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투자대상회사를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당사의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법 제9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2.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 대주주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3. 당사 임직원과 당사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대상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이해상충방지 세부정책

이해상충 대응 상세

1.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회사를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삼성자산운용의 주주 구성은 2018.6월 현재 삼성생명이 단독주주로서 당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삼성그룹(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 관련 제약이 존재하는 특수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해당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탁자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상기 자본시장법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당사는 대주주, 계열회사 및 기타 특수관계인 등을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의 대주주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삼성자산운용은 금융투자회사이고 당사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회사로서 펀드, 연금, 투자일임,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두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상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회사 중에서도 당사 또는 당사의 대주주인 삼성생명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계를 지니고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해상충방지 세부정책

당사는 당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수탁자책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 부서는 수탁자책임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당사는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를 통해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대주주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향후 그러한 거래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당사가 수탁자책임을 이행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삼성자산운용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내부통제기준 등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에, 특정 임직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당사의 수탁자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당사 임직원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일절 금지되기에 투자대상 회사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나아가 당사는 수탁자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수관계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투자대상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과 어떠한 사유로든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특수관계에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해상충방지 세부정책

이해상충 사실의 공개

만일 수탁자책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실제로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이를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공개하고, 고객의 입장에 따라 또는 지시를 받아 최대한 조속히 이해상충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CS센터 : 1533-0300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